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954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9545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4 선고 2019가단1097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김종영

변론 종결 2021. 8. 12.

판결 선고 2021. 9. 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4. 선고 2019가단1097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2. 체결한 증여계약을 9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피고와 이혼을 시도한 주요 갈등원인 중 하나가 증인의 채무 문제였다는 것이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국현

판사김광진

판사이효진

별지